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8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신성범·강선영·박정하

이상휘 · 김종양 · 김위상

구자근 • 정희용 • 박충권

조은희 • 권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업 시장을 개방하면서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 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는 2024년 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다수의 농어업인 이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도시 지역에 비하여 심화되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종료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하려는 것임(안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제88조제3항"을 "제88조제4항"으로, "2024년"을 "2031년"으로 한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제88조제3항"을 "제88조제4항"으로, "2024년"을 "203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541 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 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 의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
료 보조) 지역가입자인 농어업	료 보조)
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u>제88조제3항</u> 의 개정규정에도	제88조제4항
불구하고 <u>2024년</u> 12월 31일까	<u>2031년</u>
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서 지원한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
료 보조 특례) 사업장가입자	료 보조 특례)
또는 임의가입자에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된 농어업인(당연적	
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	
자이거나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에게는 <u>제88조제3항</u> 에도	

불-	구하고 <u>20</u>	<u>)24년</u>	12월 3	31일까
기	본인이	부담할	연금」	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	서 대
통합	청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	어촌구조	개선특	· 별 회 계	ᅨ에서
지	원한다.			

<u>2031년</u>
<u>.</u>